kakaobank 한국장애인재단

2024년 장애 아동·장애청소년 예체능 교육지원 공모사업
모두의 재능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균등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2004년 2월 21일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을 위한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2024년 카카오뱅크 '장애 아동·장애 청소년 교육지원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장애 아동·장애 청소년의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기술 향상**
※ 단순 문화체험, 사회성 향상 등의 사업은 지양함
※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함(예:사회성 향상, 의사소통능력 향상, 단순 문화체험 등)

◆ 신청자격 : 장애인 비영리단체 및 장애인 시설
-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자조모임, 사회적협동조합, IL센터,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 신청기간 : 2024. 04. 01.(월) ~ 2024. 04. 26.(금) 17시

◆ 신청방법 : 첨부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
(kimsy5428@kfpd.org)

◆ 신청내용 : 장애 아동·장애 청소년의 재능 발전을 위한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육사업**
※ 1개 기관당 1개의 사업만 신청가능
- 음악 : 악기, 노래, 작곡, 작사 등
- 미술 : 동·서양화, 조각, 도예, 웹디자인, 사진 등
- 체육 : 육상, 수영, 구기종목, e-스포츠, 태권도 등
- 기타 : 춤, 무용, 연극, 영상, 문예, 코딩 등
- 중복 : 위 분야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

◆ 선정기관 수 및 지원금액 : 10개 기관 선정, 각 기관당 최대 6,000,000원 지원
※ 첨부된 예산지침 참조하여 신청서 작성할 것

◆ 공모일정

내용	일자
사업공고	2024년 3월 29일(금)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4월 26일(금) 17:00
심사기간	2024년 4월 29일(월) ~ 2024년 5월 17일(금)
결과발표	2024년 5월 21일(화) 15시 개별 메일 안내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기관 대상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2024년 5월 30일(목)까지
지원금 지급	2024년 6월 초
사업진행	2024년 6월 ~ 12월(최대 7개월)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최대 2025년 1월 31일(금)까지

※ 공모선정된 사업은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게재 예정
(참여자 사진 촬영 및 인터뷰 협조 필수)

◆ 문의 : 지원사업팀 02-6399-6233~4 / kimsy5428@kfpd.org

[2024년 모두의 재능 예산지침]

1. 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음.
2. 든 예산은 체크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3. 강사비 지급 시 원천징수 확인.
   ※ 기타소득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소득세법 제21조 참조)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
   ※ 사업소득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예 : 프리랜서 작가 등)
   금액과 상관없이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
4. 유형자산비(노트북, 컴퓨터, 책상 등)는 편성할 수 없음.
5. 재료비 최고한도액은 없으나 소모성 재료를 원칙으로 함.(악기 구매 자제)
6. 사업비 잔액 1,000원 이하는 기관 잡수입 처리할 것.(은행수수료 제외 실 잔액이 1,000원 이하)
7.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최고한도액	비고
강사비	특별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재단이 인정한 자	1시간 최대 350,000원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 강사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가능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은 참고
	1급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이상 공무원 ▪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실무경력 20년이상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재단과 사전협의)	1시간 250,000원 초과 매시간당 150,000원	
	2급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 통계이론, SAS, SPSS 등의 전문가 ▪ 박사학위소지자	1시간 230,000원 초과 매시간당 120,000원	

항 목		기 준	최고한도액	비고
		▪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강사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재단과 사전협의)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실무경력 5년이상 ▪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시설·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재단과 사전협의)	1시간 17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50,000원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다수인 출 강	▪ 2시간 이하	5인 이하 최대 33만원 6~10인 최대 45만원 11인 이상 최대 55만원	
		▪ 2시간 초과	5인 이하 최대 38만원 6~10인 최대 55만원 11인 이상 최대 80만원	
	온라인 녹화형 강의	▪ 오프라인강의를 그대로 촬영하여 사이버 강의화 한 콘텐츠 ▪ 강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원고를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콘텐츠	오프라인 강의 강사비와 동일 강사출연비 : 시간당 10만원 이내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의시간 기준	강사 출연비 : 촬영된 강의의 다회노출 부담에 대한 보상
	온라인 실시간 강의	▪ 강사와 강의대상이 특정시간에 원격 강의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	오프라인 강의 강사비와 동일	
회의참석비		▪ 2시간 이하	100,000원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자문이 가능한 특정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의 회의참석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 (단체임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 등 단순조사요원에 대한 지급은 불가하며, 자문비 등과 중복지급 불가)	130,000원	
국내여비		시내여비	실비	
		시외여비 교통비 (KTX일반, 고속버스 등)	실비	
		식비(1인 1일)	25,000원	

항 목	기 준		최고한도액	비고
		숙박비(1인 1실)	실비(상한액 50,000원)	초과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과 상의 필요
	유류비	유류비	실비	네이버 지도 가장 빠른 길 기준
식비	1인 기준		15,000원	참석자가 모두 내부직원일 경우 지출 불가
다과비	1인 기준		7,500원	
기타비용	▪ 플랜카드(10M×1M 기준)		70,000원	농인관련단체의 경우 부설 수화통역센터로 지급하는 수어통역비는 심사시 삭감, 평가시 환수될 수 있음
	▪ 버스 임차비(1일 대여기준)		500,000원	
	▪ 활동보조인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단가에 준함	
	▪ 수어통역비 - 1시간 기준		200,000원	
	▪ 점역비		조달처 단가에 의함	